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 의 장

제32호      2016. 7. 29(금)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964호 남원시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2
- 남원시 공고 제 2016 - 972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남원시 공고 제 2016 - 974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남원시 공고 제 2016 - 981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시송달공고 ..... 20

<b>회 람</b>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공고 제2016-964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남 원 시



#### □ 공인 신조 등록 [민원과]

- 1. 공인 등록사유 : 민원발급 인증기 교체
- 2. 공인 등록 일 : 2016. 7. 26.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 원 시 장 인 민원사무전용(3)	2.6cm×2.6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민원과
등록	남 원 시 장 인 민원사무전용(4)	2.6cm×2.6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민원과

☐ 공인 폐기 [민원과]

- 1. 공인 폐기사유 : 민원발급 인증기 교체
- 2. 공인 폐 기 일 : 2016. 7. 26.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
-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남 원 시 장 인 민원사무전용(3)	2.6cm×2.6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민원과
폐기	남 원 시 장 인 민원사무전용(4)	2.6cm×2.6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민원과

## 남원시 공고 제2016 - 972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법제처 규제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전 예치금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사용료를 감경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예고기간 : 2016. 7. 27 ~ 2016. 8. 16(21일)

## 3. 주요내용

- 가.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전 예치금 규정 삭제(안 제10조제3항)
- 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00 / 남원시 충정로341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8),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교육체육과(063-620-56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없는 한”을 “없다면”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산정한다.”를 “산정,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정한다.”를 “산정”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를 “사용자가 부담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제12조 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u>필요</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필요</u>----- -----.</p>
<p>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u> 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시설의 개방) ① ----- ----- <u>없다면</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시간) ① (생략)</p> <p>②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u>산정한다</u>. 다만, 비 올 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p>	<p>제9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 ----- ----- <u>산정, 다만</u> ----- -----</p> <p>2. ----- -----</p>

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  
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  
다.

③ (생략)

제10조(사용료) ①·② (생략)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  
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  
한 비용은 사용자의 의무를 담  
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  
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  
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  
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  
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

-----  
----- 산  
정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② -----  
-----  
-----  
----- 제8호-----

# 시 보

<p>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 ----- -----.</p>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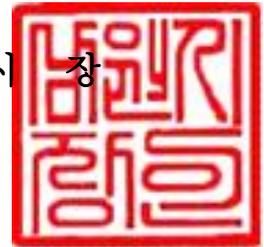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6 - 974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형 가축사육시설 신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악취 등 집단 환경민원 빈발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대제한지역에서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 (안제3조 별지)
  - 한·육우의 경우 : 300m 이내 지역 ⇒ 5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1,0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 100m 이내 지역 ⇒ 500m 이내 지역
- 상대제한지역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기관·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1회에 한정하여 축사 증축 가능(신설 안 제4조 제9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16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폐기물자원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09)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를 “별지”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증축 시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이상의 주민등록 상 세대주의 동의 (기관·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1회에 한 함)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접수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개정 2012.8.14., 2015.2.10., 2015.8.7. 2016. 2. 12.>

##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충동</li> <li>- 죽항동</li> <li>- 하정동</li> <li>- 쌍교동</li> <li>- 노암동</li> <li>- 신촌동</li> <li>- 어현동</li> <li>- 금동</li> <li>- 천거동</li> <li>- 조산동</li> <li>- 왕정동</li> <li>- 향교동</li> <li>- 산곡동</li> <li>- 도통동</li> <li>- 월락동</li> <li>- 고죽동</li> </ul> </li> <li>○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 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 선에서 양쪽 300m 이내의 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 인원 30명 이상 기업,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 대상지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li> <li>○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육우의 경우: 500m 이내 지역</li> <li>- 젖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li> <li>- 말의 경우: 500m 이내 지역</li> <li>-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li> <li>-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li> <li>-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li> </ul> </li> </ul>

※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업종을 말한다.  
 소규모 마을 대상지는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지원계획 대상지를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 지역과 상            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            며, 그 구분은 <u>별표</u>와 같다.</p> <p>② (생 략)</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            -----            -----            -----            ----- <u>별지</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            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            -----            -----            -----.</p>
<p>1. ~ 8. (생 략)</p> <p><u>&lt;신 설&gt;</u></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증축 시 상대제한지역 안에            서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이상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의 동의 (기관·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1            회에 한정함)</u></p>



남원시 공고 제 2016-981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자 협의문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 남 원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나.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 다. 사업장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320-1번지 일원

### 2. 공고 내용

- 가. 공고기간 : 2016. 7. 29. ~ 2016. 8. 16.
- 나. 보상협의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산업용지조성담당
- 다.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거친 후 계좌입금

### 3. 공시송달 내역 : 별첨

### 4. 기타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공고기간 내 협의를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이며,

다. 재결 결과에도 협의를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규정에 따라 공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 산업용지조성담당 (☎ 063-620-6459, 647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